

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998. 1.19
교육사회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안일자및제안자 : 1998년 2월 9일 (충청북도교육감 제출)

나. 회부일자 : 1998년 2월 9일

다. 상정일자 : 1998년 2월 19일

(제145회임시회 제1차교육사회위원회) 상정 심사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(관리국장 신재철)

가. 제안이유

- 학생수 격감으로 인한 소규모 중학교의 분교장 개편

나. 주요골자

- 소규모 중학교 분교장 개편 (1개교)
 - 청풍중학교 → 제천중학교 청풍분교장 (제천시 청풍면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김영만)

0 교육법 제82조, 제85조 및 교육법시행령 제107조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, 그리고 '98 학생수용계획 지침 ('97.2.21) 에 의거

0 학부모 및 지역주민이 원하는 본교유지 또는 분교장개편 방안과 통폐합 기준에 따른 폐교 방안과의 비교검토가 필요할 것이나, 이 지역의 경우는 일반적인 이

농현상에 따른 감소가 아닌 국가시책에 의한 특수사정으로 인한 감소현상으로
피해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청풍중학교를 제천중학교 청풍분교장으로 개편,
존속시키려 하는 것임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

- 0 또한, 향후 농촌지역 학생들의 시내 전학을 줄이기 위해서 젊고 유능한 교사 배
치가 시급한 사안임

4. 질의및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첨부서류

-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- 신구조문대비표